

의안번호	제 61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10월 일 (제335회)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황규철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4년 10월 6일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
----------	----

발의연월일 : 2014년 10월 일

발 의 자 : 황규철 · 이양섭 · 김학철 · 김인수
박우양 · 이의영 · 김봉희 의원(7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나. 조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규정(안 제4조)
- 다.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의 규정(안 제5조)
- 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안 제6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체 : 불 입

5. 비용추계서 : 불 입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2014.8.19 ~ 2014.9.11.(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5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 시행 시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정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제정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 제정목적 : 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촉진과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인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도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창업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3. 관련조문: 조례안 제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나. 추계결과(분야별 추계)

- 중소기업육성자금(금리우대): 7,000천원
- 장애기업인 창업강좌 운영: 51,000천원(도비)
- 장애인기업 마케팅: 68,000천원(도비)

다. 재원 조달방안: 도비 100%

※ 매년 도비 확보하여 운영 중 ('14년 예산 기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총 계
계	43,500	13,500	32,000	37,000	126,00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500	1,500	2,000	2,000	7,000
장애기업인 창업강좌 운영 지원	12,000	12,000	12,000	15,000	51,000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	30,000	0	18,000	20,000	68,000

6. 작성자: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 강 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현황('14.8.14기준)

충북중소기업청 인증연도	지 역	장애인기업 수
2012년도(5개)	청주(청원포함)	3
	충주	2
2013년도(21개)	청주(청원포함)	10
	충주	3
	제천	4
	음성	1
	진천	1
	옥천	1
	영동	1
2014년도(36개)	청주(청원포함)	21
	충주	3
	제천	2
	음성	3
	진천	3
	옥천	2
	영동	2
총 계		62